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7월 1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박성재

●대통령령 제34704호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마목 중 “제87조부터 제90조까지”를 “제87조, 제88조, 제88조의2, 제89조, 제90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“제94조제1항제5호의2”를 “제94조제1항제5호의4”로 한다.

별표 2 제4호가목에 1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)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해당하는 죄

별표 2 제4호나목에 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해당하는 죄

별표 2 제8호나목 중 “제72조제1항제2호의2, 같은 항 제3호·제4호”를 “제72조제1항제1호의2·제2호의2·제3호·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마약류를 단순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: 2024년 8월 14일
2. 별표 1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: 2024년 10월 19일
3. 별표 2 제4호가목11)의 개정규정: 2024년 7월 19일
4. 별표 2 제4호나목8)의 개정규정: 2024년 10월 17일
5.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: 2024년 7월 24일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19563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와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20054호, 2024. 1. 16. 공포, 10. 17. 시행)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처벌 근거 조문이 추가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

것임.

<법제처 제공>